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진희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5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3. 제안이유

-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연수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임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힘 (안 제1조)
-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내용 보완(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2조, 제3조, 제4조)

5. 검토내용

-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상위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임근거를 구체화함.

- 안 제3조는 적용대상 내에서 다른 조례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상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범적 효력 우위에 있는 법령을 삭제하고 동위에 있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함.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
- 안 제2조,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함.
- 관련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음.
-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2. 10. 31.~‘22. 11. 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의 위임근거를 구체화하고,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